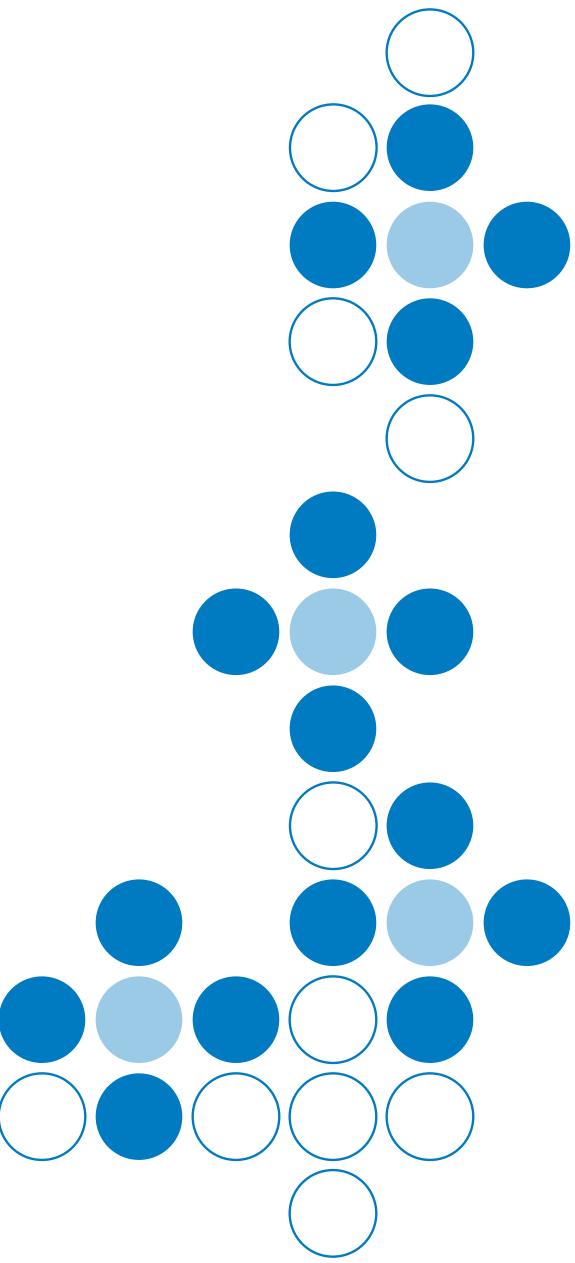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2022학년도 → 주요 개정사항

■ 다문화학생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 제2항 신설

현행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신 설>

개정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
-----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
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2. -----

-----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용어의 정리

■ 다문화학생 유형(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및 정책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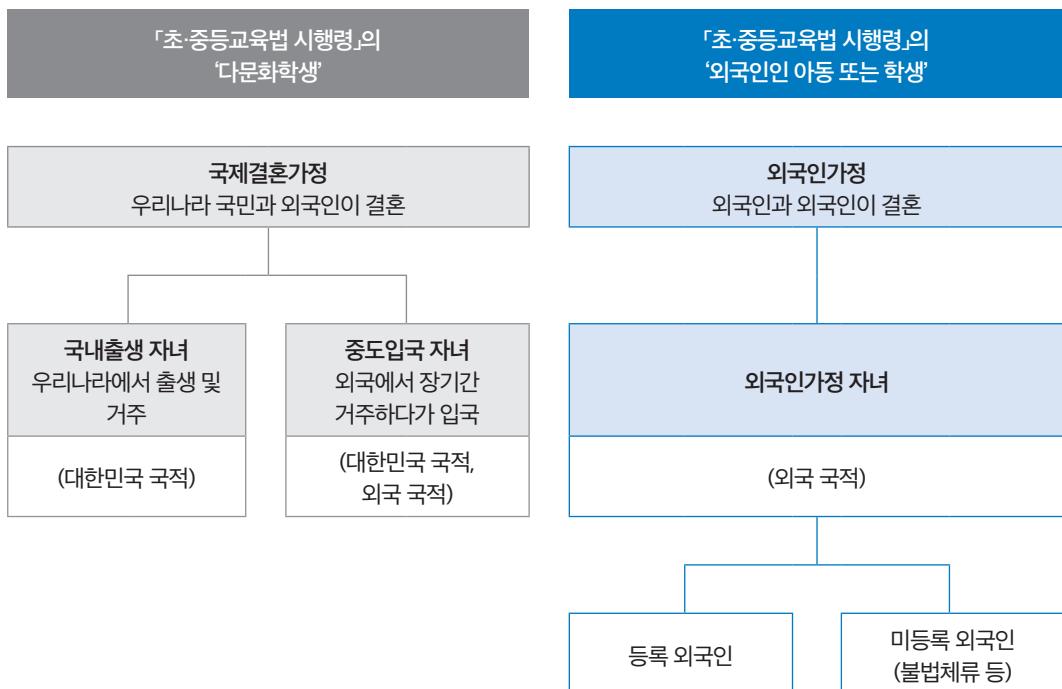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사춘기애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출처] 202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용어 정리

- **다문화학생(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 학생(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 입학전형 등과 관련한 외국인 학생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난민, 무연고,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인 아동이나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 본 매뉴얼에서는 정책 용어를 따름.

■ [참고] 정책 용어와 법령상 용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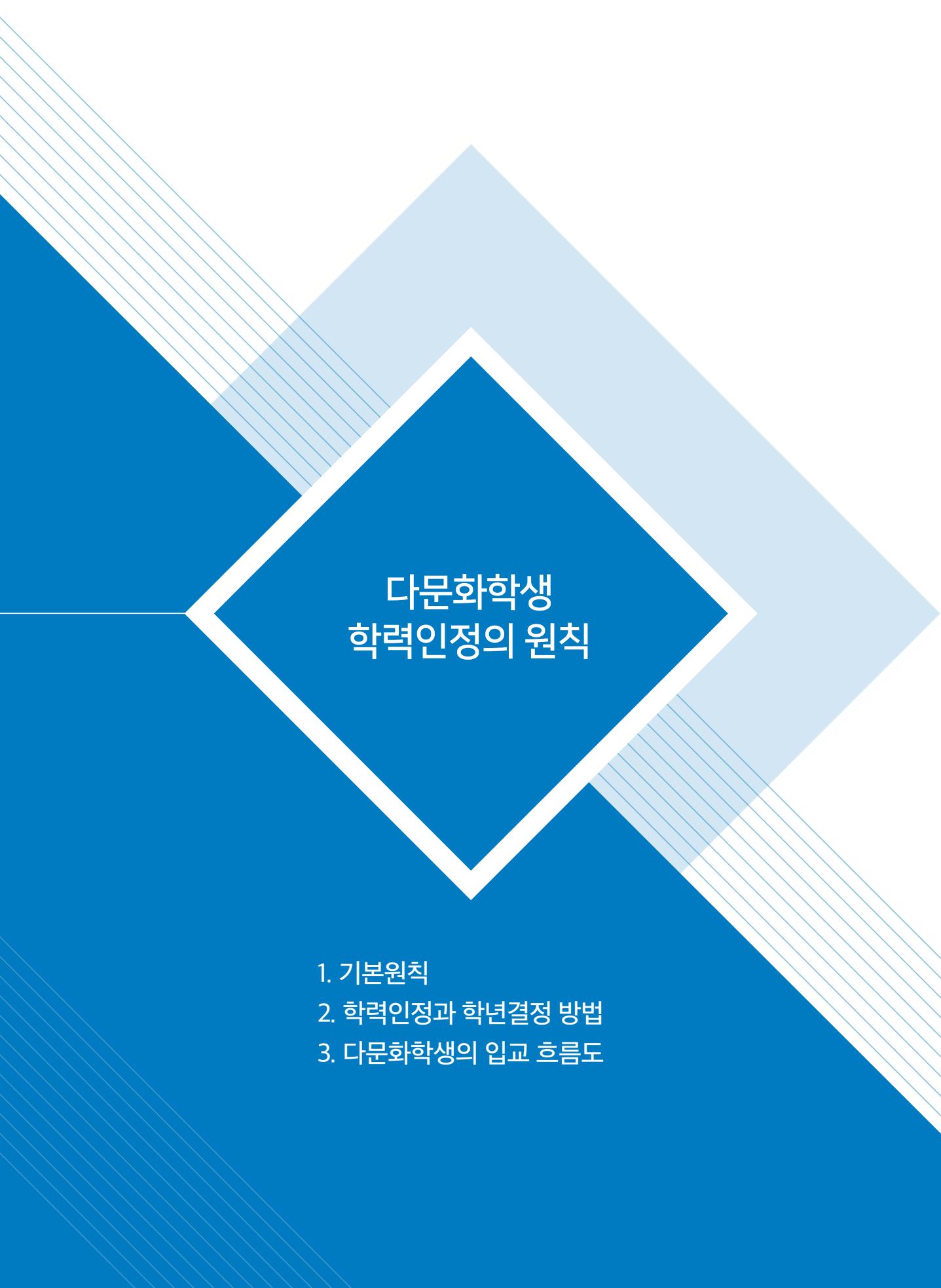


※ 외국 국적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법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에 모두 포함됨.

Contents

I	다문화학생 학력인정의 원칙	08
	1. 기본원칙	08
	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09
	3. 다문화학생의 입교 흐름도	10
II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4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14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9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24
	1.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24
	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25
	나.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절차	26
	다.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2.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32
	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32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지정 절차	33
	다.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절차	35
	라.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6
IV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FAQ	42
V	별지 서식	46
VI	부록	54

I <<



다문화학생 학력인정의 원칙

1. 기본원칙
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3. 다문화학생의 입교 흐름도

I

다문화학생 학력인정 원칙

1. 기본 원칙

가. 학령기 아동에게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 학령기 아동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지칭함.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¹⁾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9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보장함.

-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

1) 우리나라 발효일: 1991년 12월 20일(조약 제1072호)

나. 학령기 아동에게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학생이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가.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와 제98조의3

나. 대상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다. 방법

1)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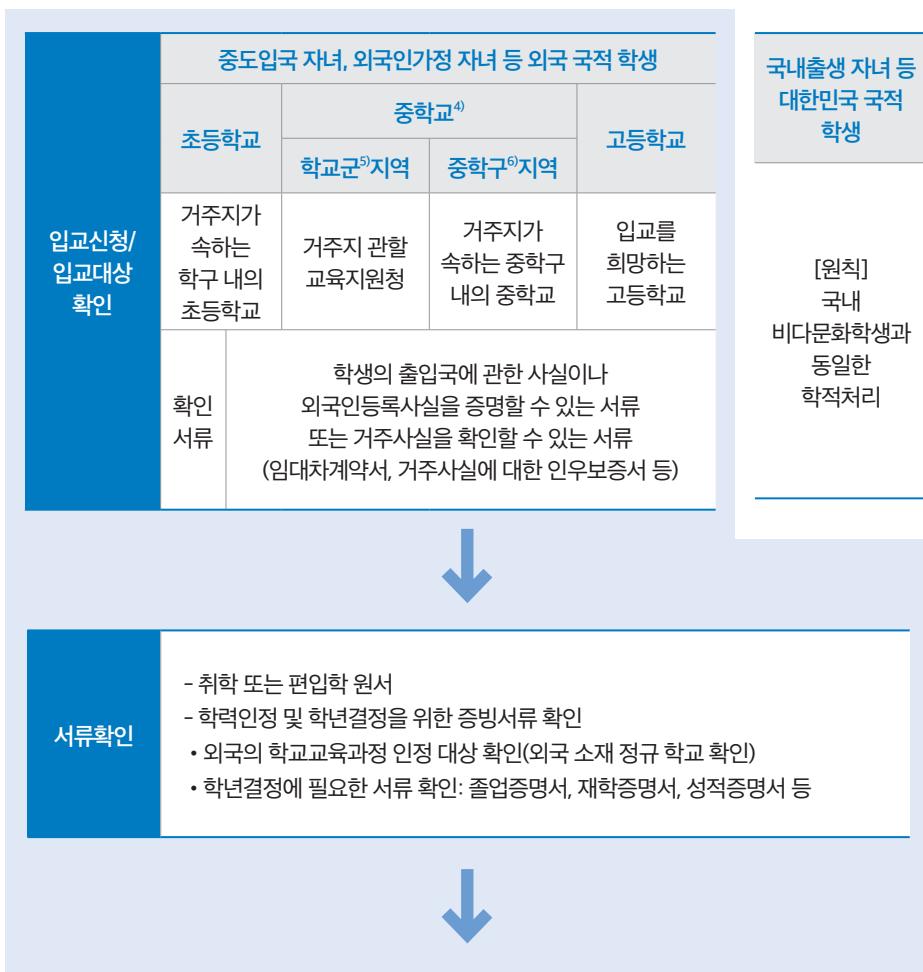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²⁾

- 교육감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인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게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2)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참조. 24쪽.

3. 다문화학생의 입교³⁾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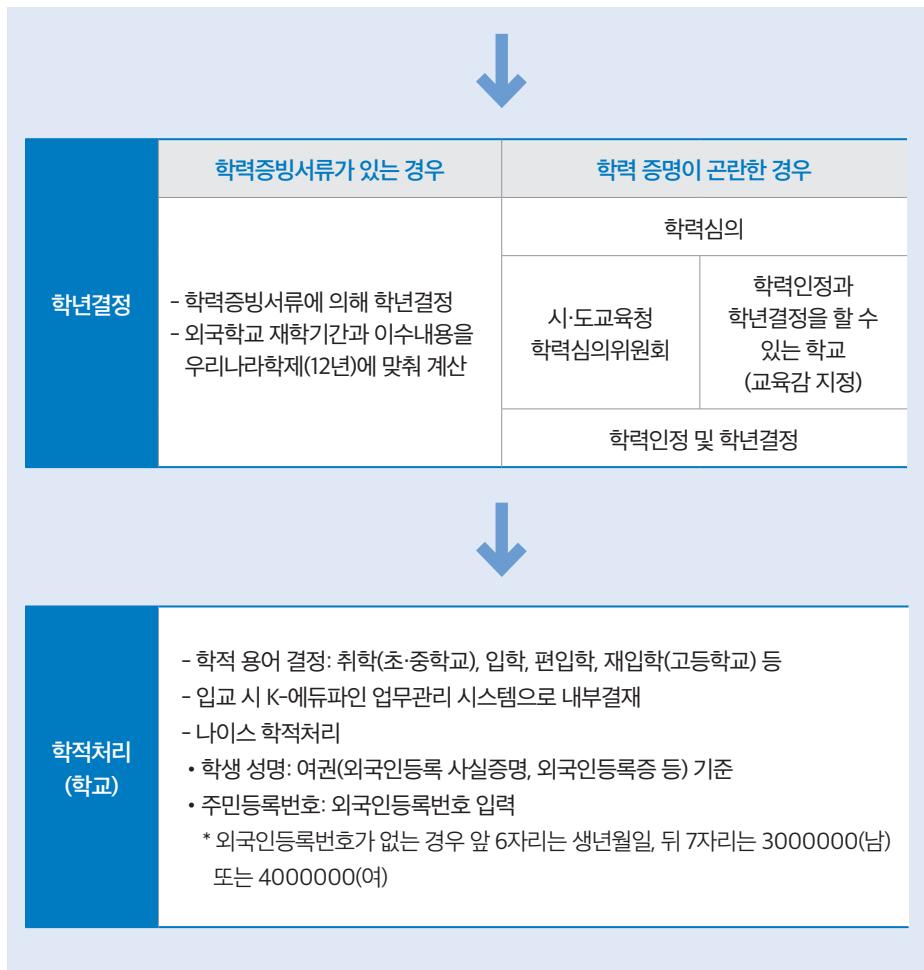


3) '입교' 또는 '입급'은 학교에 들어오게 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방법은 입학, 취학, 편입학, 재입학 등 다양함.

4) 중학교 배정, 전·편입학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배정 지침에 따름.

5)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6)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II <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II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함.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학기단위)을 기준으로 인정함.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과정
-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과정
-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종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 (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예시] 2016년 9월 외국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신입학 → 2022년 8월 외국학교 12학기 이수
→ 이수한 당해(2022년 9월)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취학 가능

☞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 취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13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나, 외국학교가 1학년 신입학을 9월에 실시하여 학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한 학기가 부족하더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취학이 가능함.

단, 12학기를 이수 후 연속하여 국내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나. 외국의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 → [정책] - [초·중·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함.
[문서명: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안내]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982
(2014.8.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받음.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 1. 24. 발효(우리나라는 2007. 7. 14. 발효)
* 외교부 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 메인화면→[발급 서비스 바로가기]→[서비스 안내]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에서 '가입국 현황' 확인 가능함.
-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음.

※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3)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 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

※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4) 위의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
(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제출 시 주의사항

-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입교가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다.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제출 서류

1)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학교급에 따른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

학교급	신청하는 곳	
초등학교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내의 초등학교의 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중학교	학교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
	중학교 ⁷⁾	거주지가 속하는 중학교 내의 중학교의 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2020.8.15.부터 적용)
고등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2)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제출 서류

가)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다) 성적증명서

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

* 학교장의 서명(날인)이 있으면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학생의 국내 이전 학교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 학교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청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사)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아)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7)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 외국학교의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초·중·고 교육] 메뉴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재학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 ※ 교육부 홈페이지 미답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서류를 확인함.

라. 학년결정의 원칙

- 1)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히스클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2)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 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 3)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입국 후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옮겨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학년 배정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중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 초·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며,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4)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5)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6)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II.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함.

※ (예시) 일본 초등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베트남 초등학교(5년제)에서 3년 수학 후 초등학교를 최종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중학교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취학(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함.

※ (예시) 베트남에서 초등학교(5년)와 이탈리아에서 중학교(이탈리아에서만 3년 수학)를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국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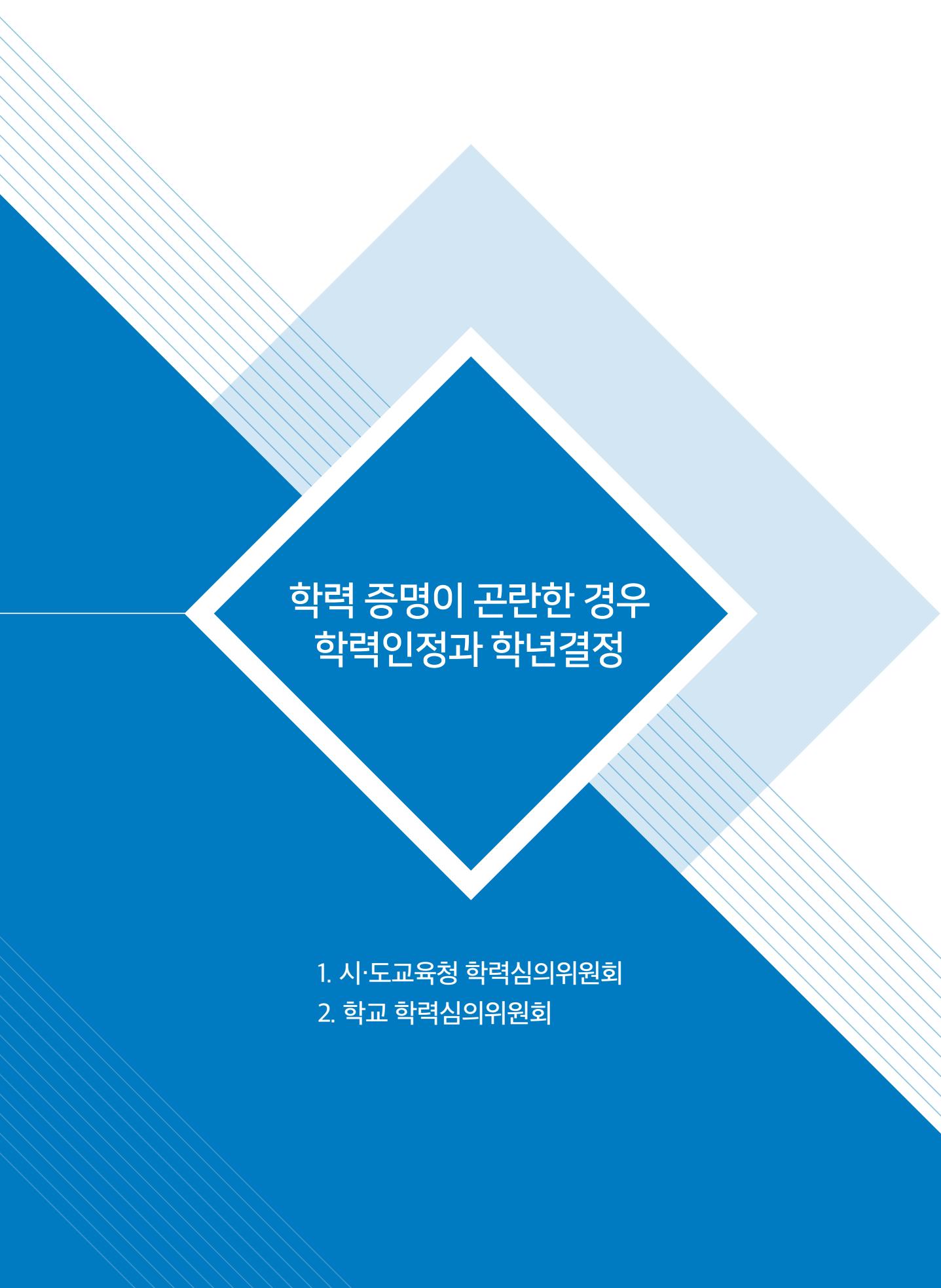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라.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2.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1) 목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따라 학령기 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으로 표현함)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2) 방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여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인정기준, 학력인정 대상,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교육감이 마련함.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3) 심의 대상

- 학령기 아동으로서 해당 시·도의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학생(국내출생 자녀 등)은 국내 비다문화학생과 동일한 학적처리 및 귀국학생 학적처리 방법 적용

※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입교 신청 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학력 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나.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절차

1) 심의 절차

가) 초등학교, 중학교(중학교⁸⁾ 소재), 고등학교 입교 희망 시(예시)



8)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나) 중학교(학교군⁹⁾ 소재) 입교 희망 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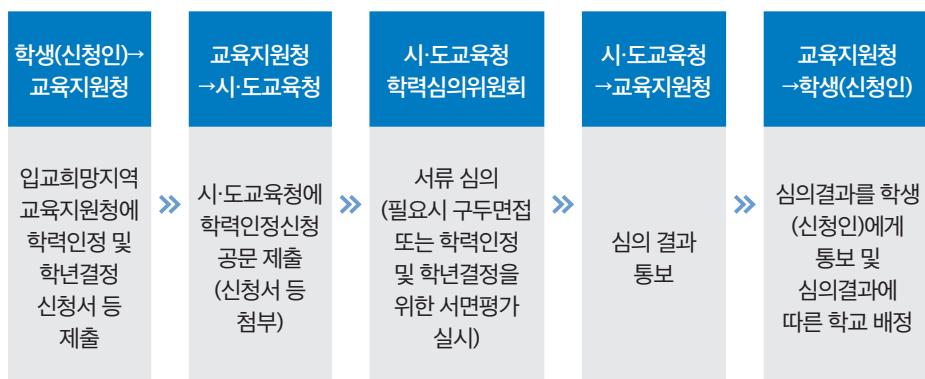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에 따라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의 신청을 교육지원청에 하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학력심의를 진행함.

(1) 학교에서 시·도교육청 학력심의 요청



* 시·도교육청 학력심의 결과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보(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력심의 결과 첨부)

(2) 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 학력심의 요청



9)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2) 제출 서류(예시)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학력 증빙 관련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 학적 생성 전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3) 심의 세부 절차(예시)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류 검토(미비서류 요청, 통역관 배석 검토)
3.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4.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서류) 및 구두면접 시 평가기준 논의
5. 구두면접 실시(필요시 통역관 배석 가능)
6. 학력인정평가 실시 여부 결정(필요시 학력인정평가 실시)
7. 심의 결과 교육감 결재(전결 가능)
8. 심의 결과를 신청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 통보(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교부)

다.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함.
 - ① 다문화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 ② 교육전문가
 - ③ 학력평가 전문가
 - ④ 다문화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권장)
-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시·도 조례에 의한 학력심의위원회 대체 위원회

- ※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 만약,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음.

2) 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지정 가능 인원 및 운영 기간 결정 등)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기준

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방법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심의하여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함.
-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심의 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면접이나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단,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 방법(예시)]

구분	평가 내용
구두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국적, 나이, 가족상황, 한국으로의 이주배경, 한국생활에 대한 소감 및 기대 등 - 교육경험(본국, 제3국 등): 본국 및 제3국의 교육제도, 학교의 규모(전체 학생 수, 학년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이수한 교과목, 외국어 교육정도 등 - 인·적성 관련 사항 - 현재 학력수준 파악(한국 교과내용에 대한 질문)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번역 활용 • 구술면접 시간, 내용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진단도구*(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국어, 수학, 영어(각 과목당 20문항/40분) - 중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각 과목당 25문항/45분) ※ 지원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프랑스어, 버마(미얀마)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 진단도구 파일 활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문의 • 서면평가 과목과 반영 비율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시·도교육청의 자체 평가지 활용 가능

-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학력을 인정함.
-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언어적 소통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음.
- 학력인정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것임.
- 학년결정은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입교할 학교급, 학년과 학기를 정하는 것임.
 -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정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 시·도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결과를 신청기관(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하고, 학교는 통보 결과에 따라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함.
 -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학력심의를 요청한 후 학력심의 결과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최초 배정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통보(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결과 첨부)하여 다른 학교급의 학교로 배정을 요청함.

- 학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함.

나) 학력심의 시기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
※ 시·도교육청별로 학력심의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인한 대상학생의 학습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

4)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증명서 발급 및 관리

-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후 학력심의위원회위원장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교육감 결재¹⁰⁾)하여야 함.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대한 교육감 결재(전결 포함)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교육감의 결재(전결 포함) 후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발급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편철하여 관리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함.
- 학력심의를 신청한 기관(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으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기타

- 학력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기타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10) 시·도교육청의 전결규정에 의해 전결 가능함.

2.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1) 목적

- 학령기 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운영 절차를 마련함.
※ 지정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함(지정 기준 및 학교 지정 절차는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 (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2) 방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하여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운영함.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칙을 개정함.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은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권장사항이며, 이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학력심의를 할 수 있음.
-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3) 심의 대상

-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학생(국내출생 자녀 등)은 국내 비다문화학생과 동일한 학적처리 및 귀국학생 학적처리 방법 적용

※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입교 신청 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학력 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지정 절차

1) 지정요건

- 교육감은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기준(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수)을 정함.

[기본 원칙]

-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이 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교육감은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운영교를 지정함.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2) 지정 및 운영절차



* 일정한 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3)의 수,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간(예: 1년, 2년, 3년 등) 등을 결정함.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신청서(예시): 부록3 참조

***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함

[학칙 예시]

제○○조(학력심의)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¹¹⁾,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 다문화학생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조(학력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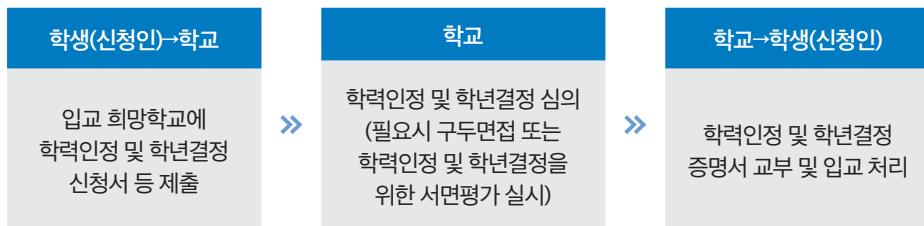
- ①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11) 지정받은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의 학력심의를 할 수 있음.

다.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절차

1) 심의 절차

가) 초등학교, 중학교(중학구 소재), 고등학교 입교 희망 시(예시)



나) 중학교(거주지 학교군 소재) 입교 희망 시(예시)



* 학교의 학력심의 결과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보(학교의 학력심의 결과 첨부)

2) 제출 서류(예시)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학력 증빙 관련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등 구체적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 학적 생성 전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3) 심의 세부 절차(예시)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류 검토(미비서류 요청, 통역관 배석 검토)
3. 학력심의위원회 소집
4.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서류)와 구두면접 평가기준 논의
5. 구두면접 실시(필요시 통역관 배석 가능)
6. 학력인정평가 실시 여부 결정(필요시 학력인정평가 실시)
7.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
8. 신청인에게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교부 및 입교 처리

라.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학력심의위원회 구성¹²⁾

- 학력심의위원회는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함.
 - ① 교감: 위원장
 - ② 다문화교육 관련 교원
 - ③ 학력평가 전문가(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 학칙에 의한 학력심의위원회 대체 위원회

※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 대체 위원회(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 포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2), 3), 4) 항목을 적용함.

2) 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12) 해당 내용은 예시로 작성된 내용이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기준

(1)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방법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심의하여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함.
-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심의 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면접이나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단,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 방법(예시)]

구분	평가 내용
구두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국적, 나이, 가족상황, 한국으로의 이주배경, 한국생활에 대한 소감 및 기대 등 - 교육경험(본국, 제3국 등): 본국 및 제3국의 교육제도, 학교의 규모(전체 학생 수, 학년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이수한 교과목, 외국어 교육정도 등 - 인·적성 관련 사항 - 현재 학력수준 파악(한국 교과내용에 대한 질문)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번역 활용 • 구술면접 시간, 내용 등은 해당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진단도구*(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국어, 수학, 영어(각 과목당 20문항/40분) - 중학: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각 과목당 25문항/45분)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 지원언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 서면평가 과목과 반영 비율은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학교의 자체 평가지 활용 가능

-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학력을 인정함.
-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언어적 소통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음.
- 학력인정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것임.

III.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학년결정은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입교할 학교급, 학년과 학기를 정하는 것임.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 학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학년의 학기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함.
 - 학력심의 결과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보(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결과 첨부)하여 다른 학교급 학교로 배정을 요청함.
- 학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함.
 - * 서명(날인)은 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의 '협조'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2) 학력심의 시기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
※ 학교별로 학력심의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자연으로 인한 대상학생의 학습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함.

4)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 및 관리

(1) 학교

- 학력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함.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의결서'에 대한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함.
-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는 학교장 결재 후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급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편철하여 관리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함.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년(학기)으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하여야 함.
- 학교는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2) 시·도교육청

- 정기적(예: 월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함.
-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상시, 정기)과 관리·감독을 함.

5) 기타

- 학력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기타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IV <<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FAQ

Q1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는 ‘북한이탈주민(학생포함)과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교육감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이 일정한 수 이상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장에게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2

학력증빙서류가 다문화학생 등의 모국어로 되어 있고 다문화학생 등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도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다문화학생 등이 한국의 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이전의(자국) 교육경험 관련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문화학생 등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통(번)역사를 활용하여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언어 강사를 통(번)역사로 활용 가능함.

Q3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학력인정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심의를 위해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은 학교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 능력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 무연고, 난민 등과 같이 학력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는 구두면접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학력인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과목 및 반영비율은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학력인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Q4

다문화학생 등이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처리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다문화학생 등의 학습공백 최소화 및 교육소외 예방을 위해 처리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력심의위원회 개최를 기점으로 심의결과 통보까지는 약 14일 정도 소요 됩니다. 단,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경우 개최 일정에 따라 소요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외국 국적 학생이 학력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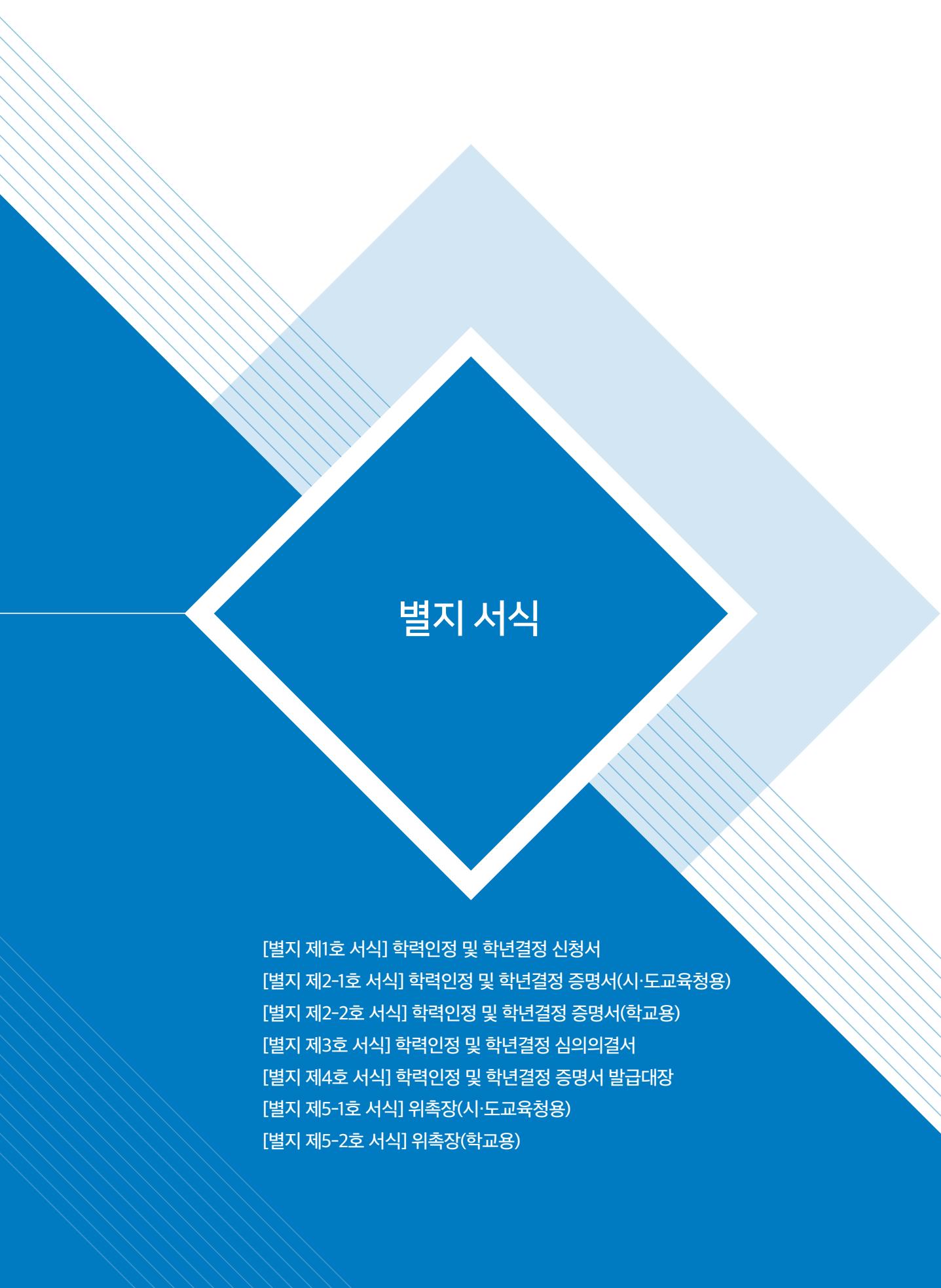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초·중학교 재학생이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었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 국적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와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한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Q6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한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기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결정된 학년(학기)으로 입급하면 됩니다.

V <<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시·도교육청용)

[별지 제2-2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학교용)

[별지 제3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5-1호 서식] 위촉장(시·도교육청용)

[별지 제5-2호 서식] 위촉장(학교용)

[별지 제1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신청내용	학 력 인 정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졸업 인정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졸업 인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 년 결 정		
참고사항 (신청자 의견 등)						
<p>위와 같이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붙임서류]</p> <p>1. 여권사본 1부 또는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3. 학력 증빙 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p> <p>○○○교육감** 귀하</p>						

*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장'을 기재

※ 다국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은 다문화교육포털

(www.edu4mc.or.kr)에서 제공

[별지 제2-1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시·도교육청용)

제 ○○ 호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한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조에 의거하여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
○학교 ○학년 ○학기의 학년으로 결정됨.

20 년 월 일

○○○교육감

*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학교용)

제 ○○ 호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조에 의거하여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
○학교 ○학년 ○학기의 학년으로 결정됨.

20 년 월 일

○○○학교장

*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				결재	교육감* (국장전결)	
심의일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심의내용	제출 서류 확인 학력사항		학 력 인 정			
	참고의견 (본인의지 등)			심의결과	학년결정	
심의의견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		서명
				학력인정	학년결정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는 '학교장'으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V. 별지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심의 일자	심의 결과

*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별지 제5-1호 서식] 위촉장(시·도교육청용)

제 ○○ 호

위 촉 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한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조에 의하여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 . .)

20 년 월 일

○○○교육감

[별지 제5-2호 서식] 위촉장(학교용)

제 ○○ 호

위 촉 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의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 . .)

20 년 월 일

○○○학교장

VI. 부록

[부록 1]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예시)

[부록 2]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예시)

[부록 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 신청서(예시)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2. 목적

- 가. 학령기 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3. 방침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여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인정기준,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라.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1)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다문화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 ② 교육전문가
- ③ 학력평가 전문가
- ④ 다문화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권장)

3)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별지 제5-1호 서식)을 교부한다.

5)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 ②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③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나. 간사

1) 학력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학력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소속 직원으로, 교육감이 정한다.

다.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진행시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신분변동·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마. 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회의개최 및 의결

1)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3)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사. 회의록

1) 학력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아. 운영세칙

1)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학력 증명 곤란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

1)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자

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 입교 신청 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 ②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 ③ 학력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 1)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면접과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 3)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4) 학년결정은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 학년과 학기를 정하여 신청자와 학교에 통보한다.

다.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관리

- 1) 학력심의위원회위원장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에 대한 교육감 결재(전결 포함)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교육감의 결재(전결 포함) 후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발급한다.
- 4)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 5)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 6) 학력심의를 신청한 기관(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으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이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교육감은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한다.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인원 결정
- 2)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운영기간 결정
- 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
- 4)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부록 2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예시)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2. 목적

- 가. 학령기의 아동(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가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최소한 교육기회(의무교육 9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3. 방침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의하여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칙을 개정한다.
- 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라.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학력심의위원회 구성¹⁴⁾

- 1)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교감 : 위원장
- ② 다문화교육관련 교원
- ③ 학력평가 전문가(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3)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의 경우 위촉장(별지 제5-2호 서식)을 교부한다.

4) 위원으로 위촉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 ②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③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진행 시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 위원의 임기

-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인사이동·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해촉할 수 있다.
- 3)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라. 학력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1)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마. 회의개최 및 의결

- 1)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13) 해당 내용은 예시로 작성된 내용이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음.

-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6)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 등의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의 통(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바. 회의록

- 1) 학력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명(날인)은 업무관리시스템의 '협조'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사. 운영세칙

- 1)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5. 학력 증명 곤란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대상

- 1) 학령기 아동으로서 초·중등학교에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신청을 하였으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포함)으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자
- 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 입교 신청 없이 졸업학력만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 ② 학력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 ③ 학력증명이 곤란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단순 서류 미비·지연, 오류 등은 사유가 될 수 없음)

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의 심의 원칙

- 1)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교육과정 이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구두면접과 언어·수리능력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여 현재의 학력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 3)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학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도교육청은 학교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심의 결과를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조사하여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다.

다.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관리

- 1) 학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2)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의 효력은 해당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교육감 위임을 받은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학교장 결재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교에 보관한다.
- 4)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별지 제2-2호 서식), '기타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관련서류'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여 관리하며 준영구 보존한다.
- 5)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증명서'에 명시된 학교급, 학년(학기)로 입교(취학, 입학, 편입학) 처리한다.
- 6) 학력심의 결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받은 학생의 학교급을 다르게 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통보(학교의 학력심의 결과 첨부)하여 다른 학교급으로 배정을 요청한다.

[부록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 신청서(예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지정을 신청합니다.

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학교장		성명	
	교감		담당자	연락처
	학교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학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초중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학급)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 현황(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력 증명 곤란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								
계								
학교 학력심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반영 예정 사항 - 학칙에 의한 학력심의위원회 대체위원회 운영 시 대체위원회 명칭 - 의결 방법 - 기타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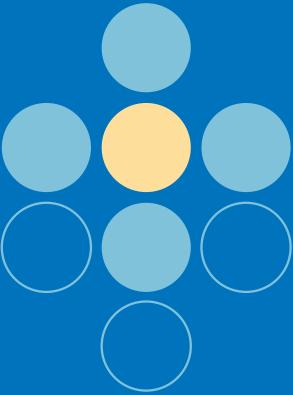
○○○○학교장 (직인)

※ 불임: 학교 학력심의 규정(학교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등) 1부

PM 2022-20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발행	2022년 5월
발행인	강대중 원장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협력관	차병준(교육부), 심나빈(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청계천로 14, 9층
전화	02-3780-9784
FAX	02-3780-9959
홈페이지	www.nile.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edu4mc.or.kr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디자인/인쇄	현대아트컴



2022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